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460

2024. 6. 11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4. 5. 31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(안 제2조제1호, 제9조제1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)
 - 영유아 연령 표기 : 6세 미만 → 7세 이하
 -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: 15명 이내 → 20명 이내
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: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
 -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의 취소
: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준용 →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준용

-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(안 제7조)
 -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나 상위 법령 그대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문 삭제
- 상위 법령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심의 및 운영 방법 정비 (안 제 23조제4항, 제26조)
 -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같음하여 수탁 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
 -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취소 기준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 영유아 연령 정의,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,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같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.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